2025년 K-HERO 육성·지원사업 공고

글로벌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을 위한 2025년 K-HERO 육성·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19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상 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

1. 사업목적

-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수 R&D 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를 발굴·중점 지원하여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우수연구소(K-HERO*)로의 육성·지원
 - * K-HERO : Korea-Highest Excellence R&D Organization
 - 기업연구소 R&D역량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연구소의 질적성장 도모 및 기술경쟁력 제고

2. 지원분야

- **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*** **50대 중점기술** 및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관련 전·후방 산업 기술·제품 개발
 - * (12대 국가전략기술) △반도체·디스플레이, △이차전지, △첨단 모빌리티, △차세대 원자력, △첨단바이오, △우주항공·해양, △수소, △사이버보안, △인공지능, △차세대 통신. △첨단로봇·제조. △양자
 - ※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 관련 상세자료는 사업공고 첨부자료 ([별첨]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) 참고

3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- 지원대상
 - 내역①(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) : <u>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^①된 기업부설</u> 연구소 중, <u>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요기술을 보유^②하였고, 글로벌</u> 시장을 개척 중인 기업부설연구소^③
- ① (우수기업연구소 지정기업)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
 - *(자격판단서류)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(공고종료일 기준 인증기간 유효 필수)
- ② (원천기술 보유) 국내외 표준특허, 삼극특허, NET/NEP 등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국내외 신기술 인증 보유
 - * (**자격판단서류**) 표준특허, 삼극특허, NET/NEP인증 등 우수기술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③ (세계 시장 점유율)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연구소
 - * (자격판단서류) 수출현황 또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수출 실적증명원, 해외기관과의 계약체결서 등)
- 내역②(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) :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 중,「R&D 역량진단시스템(R)」에 따라 <u>3개년도 R&D역량 진단('21~'23)*결과가</u> ^{내내역①}2그룹(역량상위20%<R≤40%) / ^{내내역②}3그룹(역량상위40%<R≤60%)으로 지속성장*한 기업부설연구소
 - * 3개년 역량진단결과 지속성장하여 2그룹/3그룹에 도달하였거나, 2그룹/3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(상위 %)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

○ (지원가능 예시)

- '23년 역량진단 전까지 역량 상위 60% 이내에 속하지 않았으나, 지속 성장하여 '23년 역량진단 결과 2, 3그룹에 속한 기업연구소
 - * **(예시)** ('21년)상위90% → ('22년)상위 67% → ('23년)상위 58% ^{내내역② 해당} ('21년)상위77% → ('22년)상위 58% → ('23년)상위 24% ^{내내역① 해당}
- '21년~'23년 역량진단결과 2, 3그룹(역량 상위20%<R≤60%)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 성장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
 - * (예시) ('21년)상위58% → ('22년)상위 44% → ('23년)상위 42% ^{내내역② 해당} ('21년)상위35% → ('22년)상위 33% → ('23년)상위 26% ^{내내역① 해당}

○ (지원불가 예시)

- '21년~'23년 역량진단결과 중 R&D역량이 저하된 연도가 존재하는 기업연구소
 - * **(예시)** ('21년)상위57% → ('22년)상위 33% → ('23년)상위 44%
 - * **(예시)** ('21년)상위48% → ('22년)상위 50% → ('23년)상위 47%

[참고 1] 기업부설연구소 R&D 역량진단시스템 개요

- (개발배경) R&D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그 수준에 따라 수준별 역량강화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R&D 전략수립에 활용
- (진단방법) 기업 R&D 역량지표를 정의하고 업종 및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
- (평가지표) 4개 영역(R&D자원, 혁신활동, 혁신산출, 혁신성과)의 26개의 평가지표
 - ※ 가점지표 4개(+5)를 포함하여 총 105점 만점
 - ※ 평가지표: R&D 투자규모, R&D 집약도, 연구원 수, 연구기자재 수, 연구소 업력, 고급 연구인력 비중, 교육훈련비 비중, 신기술·신제품 인증 실적 등

[기업부설연구소 R&D 역량 진단방법]

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(https://www.rnd.or.kr/)에서 기관로그인 후 자사의 R&D역량(상위%) 확인 가능

* <역량진단 - 역량진단결과>에서 기업 공동인증서 또는 인정번호로 로그인 후, [역량진단] 메뉴에서 확인

[참고 2] 기업연구소 역량별 지원대상 사업구분

구 분	연구역량	지원가능 내역사업
우수기업 연구소	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·인정받은 기업연구소	내역사업 ① (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)
기업부설 연구소	상위 20% < R&D역량진단결과(R) ≦ 40%	내역사업②[내내역①] (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) [우수기업연구소 육성]
기업부설 연구소	상위 40% < R&D역량진단결과(R) ≦ 60%	내역사업②[내내역②] (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) [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]

- 내역사업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- 내역①(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)

구분 (내역사업명)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	지원규모/기간 (과제당 지원금)	
(41 44 8 8)	상세내용	(취세용 시즌트)	
	■ (지원대상)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<u>주요기술을 보유</u> 하 였고, <u>글로벌 시장을 개척 중인 기업연구소</u>	[1단계 : 사전기획] · 6개 과제 / 3개월 (과제당 0.75억원)	
내역 ① (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)	■ (지원내용)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핵심기술과 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의 인적·물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기술 추가확보 및 상용화 지원 ※ 핵심기술 개발확보 인허가 및 표준 확보, 사업화 전략비즈니스		
	모델 구축 및 고도화 등 지원		
		[2단계 : 사업화R&D]	
	■ (신청방식) <u>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 및 사업화</u>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	· 3개 과제 / 3.5년 (과제당 9억원 이내/연)	
	※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초·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산·학·연(기업, 대학·출연(연) 등)과 후방에서 기술자문, 평가, 경영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 (수요기업, 민간투자기관, 특허법인, 컨설팅기관 등)으로 컨소시엄 구성	※ 사전기획과제(6개) 중 기획결과 우수과제(3개) 선발하여 사업화 R&D 지원	
	※ 최소 3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(우수기업연구소+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+사업화지원기관)		

- 내역②(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) / 내내역①(우수기업연구소 육성)

구분 (내역사업명)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상세내용	지원규모/기간 (과제당 지원금)
	■ (지원대상)「R&D 역량진단시스템(R)」에 따라 3개년도 R&D역량진단('21~'23)결과 2그룹(성장형)연구소*로 지속 성장한 기업연구소 * R&D역량상위 20% < R ≤ 40%	[1단계 : 사전기획] · 4개 과제 / 3개월 (과제당 0.3억원)
내역 ② (기업 R&D역량 강화 지원 2.0) [내내역①] [우수기업연구소 육성]	■ (지원내용)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 (또는 이전할) 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신제품(기술) 개발* 지원 ※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제품에 필요한 기술/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, 인증/표준화, 시범 생산 등 지원	[2단계 : 사업화R&D]
	■ (신청방식) 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※ 연구기관(대학출연(연) 등)과 컨소시엄 구성 시,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&D성과물(특허, 노하우 등)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,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 ※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(기업연구소+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)	· 2개 과제 / 2.5년 (과제당 4억원 이내/연) ※ 사전기획과제(4개) 중 기획결과 우수과제(2개) 선발하여 사업화 R&D 지원

- 내역②(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) / 내내역②(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)

구분 (내역사업명)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상세내용	지원규모/기간 (과제당 지원금)
	■ (지원대상)「R&D 역량진단시스템(R)」에 따라 3개년도 R&D역량진단('21~'23)결과 3그룹(도약형)연구소*로 지속 성장한 기업연구소 * R&D역량상위 40% < R ≤ 60%	
내역② (기업 R&D역량 강화 지원 2.0) [내내역②] [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]	■ (지원내용)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 (또는 이전할) 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력제품(기술) 고도화* 지원 ※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R&D(이전기술 최적화, 성능/공정 최적화 등) 지원	· 2개 과제 / 1.75년 (과제당 3억원 이내/연)
	■ (신청방식) 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※ 연구기관(대학출연(연) 등)과 컨소시엄 구성 시,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&D성과물(특허, 노하우 등)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,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 ※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(기업연구소+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))	

4. 사업 세부내용

[내역1]

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

○ 사업개요

- (목적)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기업연구소를 발굴·육성하여 세계 최고· 최초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선도연구소(K-HERO)로의 성장을 지원
 - ※ 우수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·최초의 기술력을 확보하고, 기술 전·후방 R&D 밸류체인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선도
- (지원내용)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핵심기술과 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의 인적·물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기술 추가확보 및 상용화 지원 ※ 핵심기술 개발·확보, 인허가 및 표준 확보, 사업화 전략·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고도화 등
- (신청대상)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※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[3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] 참고
- (절차) ^①컨소시엄 구성(기업+대학·출연(연) 등+사업화지원기관) → ^②사전기획 지원(3개월, 2배수)→ ^③후속 지원과제 선정^{*} → ^④후속 R&D지원(3.5년) * 제안기술제품의 우수성 사업성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비탕으로 사업화 P&D자원과제 선정
- * 세한 기실(세점)의 구구경, 사업경, 기는 기실(세점)부터 시설경 중을 비중으로 사업확 MXL/시전부에 산경

- (지원규모)

구분	선정과제수	정부출연 / 민간부담비율	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
(1단계) 사전기획	6개	100% / 0%	3개월, 75백만원
(2단계) 후속R&D	3개	75% / 25%	3.5년, 9억원 이내/연

[※] 사전기획(1단계)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(상위50%)에 대해 후속R&D(2단계) 지원

 \Rightarrow

○ 선정절차

서류검토	
요건심사	
전문기관	

	서면평가		
\Rightarrow	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선정		
	평가위원회		

발표평가
최종 지원과제 선정
평가위원회

[※]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

○ 평가기준

- [사전기획단계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]

구 분(배점)	평가지표		
ルの大刀の刀(200)	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		
사업추진의지(20)	사업화 주제의 혁신성		
추진계획의	사업목표와의 부합성		
구체성(20)	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		
소해 느 려 / 40)	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, 추진체계의 적절성		
수행능력(40)	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		
실용화 가능성(20) 실용화 전략의 타당성			

- [사전기획단계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]

구분(배점)	평가항목	상세 평가지표
신제품(기술)의	기술의 혁신성	• 제안 기술의 혁신성, 차별성
우수성(30)	기술의 완성도	• 기술의 현재 수준, 완성도 - 제품/서비스 적용 가능성
	제품화 가능성	•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
신제품(기술)의 사업성(30)	사업화 추진계획	 참여주체(대학·출연(연), 기업, 사업화지원기관)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/장비 등 확보 계획
참여주체 역량(20)	시장개발역량	 기술사업화 가능성, 시장진입 가능성,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
	사업추진역량	• 참여자들의 기술개발, 사업화 추진 전문성 - 기술개발 역량, 기술사업화 역량 등
컨소시엄	사업목표 적정성	•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
활동계획 및	사업추진 적정성	•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
내용(20)	실현가능성	•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

- [후속R&D단계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]

구 분	평가지표	평가요소	
	연구책임자 역량	• 연구책임자 역량	
컨소시엄 역량 (15점)	개발역량의 적정성	 사업화R&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 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	
	인프라 보유현황	• 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	
기술개발계획	신제품개발의 타당성	 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 추가기술 도출, 기술현황, 핵심기술 분석, 핵심 기술 개발 가능성,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(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) 	
(30점)	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	 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	
	상용화 가능성	•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(시장 존재여부, 해외시장 분석여부 등)	
상용화 계획 (30점)	상용화 전략의 타당성	•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(수출확대 전략 포함)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	
	상용화 의지	•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(기업자체 추가투자, 외부 조달 계획 등)	
파급효과	협력지속 창출가능성	• 사업 완료 후 구성원 간(컨소시엄 내)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	
(15점)	기업/산업발전 기여효과	관련 기업의 매출/수출/ 고용 창출 가능성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	
운영계획 (10점)	사업비 배분의 적정성	•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,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	

[내역2]

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 [내내역1. 우수기업연구소 육성]

○ 사업개요

- (목적) R&D 역량진단결과 2그룹(도약형)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의 혁신적 신제품(기술) 기획·개발을 지원하여 우수연구소로의 성장 지원
- (지원내용)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(또는 이전할) 공공연구 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제품(기술) 개발 지원 ※ 신제품 개발 및 상용회에 필요한 기술/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, 인증/표준화, 시범 생산 등
- (신청대상) 기업연구소와 대학·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
 - · (주관연구개발기관)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로서, 3개년('21~'23) 역량진단결과 2그룹(도약형연구소)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(상위 20%< R&D역량진단 결과 \leq 40%)
 - · (공동연구개발기관)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 예정인 공공연구기관(대학, 출연(연) 등)
 - ※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[3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] 참고
- (절차) ^①컨소시엄 구성(기업+대학·출연(연) 등) \rightarrow ^②사전기획 지원(3개월, 2배수) \rightarrow ^③후속 지원과제 선정 * \rightarrow ^④후속 R&D지원(2.5년)
 - * 제안 기술(제품)의 우수성, 시업성, 기존 기술(제품)과의 치별성 등을 비탕으로 후속 P&D지원과제 선정

- (지원규모)

구분	선정과제수	정부출연 / 민간부담비율	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
(1단계) 사전기획	4개	100% / 0%	3개월, 30백만원
(2단계) 후속R&D	2개	75% / 25%	2.5년, 4억원 이내/연

[※] 사전기획(1단계)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(상위50%)에 대해 후속R&D(2단계) 지원

○ 선정절차

서류검토		서면평가		발표평가
요건심사	\Rightarrow	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선정	\Rightarrow	최종 지원과제 선정
전문기관		평가위원회		평가위원회

※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

○ 평가기준

- [사전기획단계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]

구 분(배점)	평가지표		
ルの太지の[1]/20)	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		
사업추진의지(20)	사업화 주제의 혁신성		
추진계획의	사업목표와의 부합성		
구체성(20)	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		
스해트려(40)	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, 추진체계의 적절성		
수행능력(40)	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		
실용화 가능성(20) 실용화 전략의 타당성			

- [사전기획단계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]

구분(배점)	평가항목	상세 평가지표
신제품(기술)의	기술의 혁신성	• 제안 기술의 혁신성, 차별성
우수성(30)	기술의 완성도	• 기술의 현재 수준, 완성도 - 제품/서비스 적용 가능성
	제품화 가능성	•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
│ 신제품(기술)의 │ 사업성(30) │	사업화 추진계획	참여주체(대학·출연(연), 기업)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/장비 등 확보 계획
참여주체	시장개발역량	 기술사업화 가능성, 시장진입 가능성,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
역량(20)	사업추진역량	• 참여자들의 기술개발, 사업화 추진 전문성 - 기술개발 역량, 기술사업화 역량 등
컨소시엄	사업목표 적정성	•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
활동계획 및	사업추진 적정성	•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
내용(20)	실현가능성	•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

- [후속R&D단계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]

구 분	평가지표	평가요소
	연구책임자 역량	• 연구책임자 역량
컨소시엄 역량 (15점)	개발역량의 적정성	 사업화R&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 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
	인프라 보유현황	• 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
기술개발계획	신제품개발의 타당성	 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 추가기술 도출, 기술현황, 핵심기술 분석, 핵심 기술 개발 가능성,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(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)
(30점)	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	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
	상용화 가능성	•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(시장 존재여부, 해외시장 분석여부 등)
상용화 계획 (30점)	상용화 전략의 타당성	•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(수출확대 전략 포함)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
	상용화 의지	•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(기업자체 추가투자, 외부 조달 계획 등)
파급효과	협력지속 창출가능성	• 사업 완료 후 구성원간(컨소시엄 내)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
(15점)	기업/산업발전 기여효과	관련 기업의 매출/수출/ 고용 창출 가능성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
운영계획 (10점)	사업비 배분의 적정성	•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,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

[내역2]

기업 R&D역량강화 지원 2.0 (내내역2.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)

○ 사업개요

- (목적) R&D 역량진단결과 3그룹(성장형)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제품(기술)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상위그룹으로의 성장 지원
- (지원내용)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(또는 이전할) 공공연구 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력제품 고도화 개발 지원 ※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회P&D(이전기술 최적화 성능/공정 최적화 등
- (신청대상) 기업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(대학·출연(연) 등)으로 구성된 컨소 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
 - · (주관연구개발기관)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로서, 3개년('21~'23) 역량진단결과 3그룹(성장형연구소)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(상위 40%< R&D역량진단 결과 ≤ 60%)
 - · (공동연구개발기관)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 예정인 공공연구기관(대학, 출연(연) 등)
 - ※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[3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] 참고
- (절차) ^①컨소시엄 구성(기업+대학·출연(연)) → ^②R&D지원(1.75년)

- (지원규모)

구분	선정과제수	정부출연 / 민간부담비율	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
내내역2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	2개	75% / 25%	1.75년, 3억원 이내/연

○ 선정절차

서류검토		서면평가		발표평가
요건심사	\Rightarrow	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선정	\Rightarrow	최종 지원과제 선정
전문기관		평가위원회		평가위원회

※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

○ 평가기준

- [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]

구 분(배점)	평가지표
ルの大刀の(刀/2の)	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
사업추진의지(20)	사업화 주제의 혁신성
추진계획의	사업목표와의 부합성
· - · · · · 구체성(20)	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
스해 L 려 (40)	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, 추진체계의 적절성
수행능력(40) 	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
실용화	실용화 전략의 타당성
가능성(20)	204 67-1 700

- [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]

구분(배점)	평가항목	상세 평가지표
신제품(기술)의	기술의 혁신성	• 제안 기술의 혁신성, 차별성
우수성(30)	기술의 완성도	• 기술의 현재 수준, 완성도 - 제품/서비스 적용 가능성
	제품화 가능성	•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
신제품(기술)의 사업성(30)	사업화 추진계획	• 참여주체(대학·출연(연), 기업)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• 연구인력/장비 등 확보 계획
참여주체	시장개발역량	 기술사업화 가능성, 시장진입 가능성,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
역량(20)	사업추진역량	• 참여자들의 기술개발, 사업화 추진 전문성 - 기술개발 역량, 기술사업화 역량 등
컨소시엄	사업목표 적정성	•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
활동계획 및	사업추진 적정성	•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
내용(20)	실현가능성	•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

5. 신청자격

- [공통]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
 -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공고 종료일(접수마감일) 까지 기업부설연구소*를 보유해야 함
 - ※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
 -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수행기관과 동일해야 함. 단,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,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기관인 경우,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함.
 - 「'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사전협의」에 따라, 사업공고 종료일(접수 마감일)까지 산업부 사업「우수기업연구소 육성(ATC[†])」에 참여기관으로 연구수행 중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·신청 불가
 - ※ 「우수기업연구소 육성(ATC+)」사업 수행기간이 종료된 우수기업연구소는 본 사업 참여가능
- [내역①.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]
 - 내역①에 신청하고자 하는 우수기업연구소는 사업공고 종료일(접수마감일) 까지 우수기업연구소 인정(지정) 기간이 유효해야 함
 -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

6. 평가 우대 기준

-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
 - (내역①) 우수기업연구소 중 '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'로 지정된 기업 연구소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(2점)

7. 지원제외 사항

-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
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 - ※ 이 외 [붙임 2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] 상 검토내용에 해당되는 경우

검토항목	기준
신청자격 및 공고적합성	• 주관기관 등이 신청제외 및 평가·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기 개발/	•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/기 지원 대상인지 여부
기 지원	- 기 생산.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 해당 여부
의무사항	• 주관·공동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
불이행	정산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참여제한 여부	• 주관·공동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여부
채무불이행 및	• 주관·공동기관, 대표자 등이 부도, 휴.폐업, 채무불이행, 부채비율
부실위험	1,000%이상,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

8.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**공고기간** : 2025년 2월 19일(월) ~ 3월 20일(목) 18:00까지

○ **신청기간** : 2025년 2월 19일(월) ~ 3월 20일(목) 18:00까지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
○ 신청방법

- 홈페이지(www.koita.or.kr) 사업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[붙임]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메일로 송부

- 제출처 : koita235@naver.com 또는 kykwon@koita.or.kr 로 송부

○ 제출서류

순서	구분	제출서류명	제출부수	제출기관	비고
1		신청공문 (주관기관장 명의)	1부 (PDF본)	주관기관	기관 자율양식
2		사업자등록증 (주관/공동)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
3	공통	수행기관(주관/공동)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(직전년도로부터 최근 2년 결산자료)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- 표지(회계사 직인 포함), 재무상태표 (표준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(표준 손익계산서) *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 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※ 비영리기관 및 상장사(거래소, 코스닥)는 제출 불필요
4	0 0	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(https://www.ntis.go.kr)에서 제안과제에 대해 차별성검토 실시한 결과 출력물제출 * 차별성검토 기준 40점으로 설정 하여 조회한 결과가 "차별성(유사) 과제 수" "0건"으로 나와야 함
5		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[붙임 1] 파일 작성
6	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부 (PDF본)	주관기관 대표제출	[붙임 2] 파일 작성

7		연구개발과제계획서	1부 (PDF본)		[붙임 3] 파일 작성
8	내역① (글로벌	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			우수기업연구소 지정/인증서
9	선도연구소 육성)	보유기술의 우수성 입증자료	1부 (PDF본)	대표제출	표준특허, 삼극특허, NET/NEP인증 등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10		글로벌 시장 개척 관련 입증자료	1부 (PDF본)		수출실적증명원, MOU체결서 등 수출현황 또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11	내역②- 내내역① (우수기업	연구개발과제계획서	1부 (PDF본)	주관기관	[붙임 4] 파일 작성
12	연구소 육성)	기술이전계약서*	1부 (PDF본)	대표제출	주관기관-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
13	내역②- 내내역② (기억여그스	연구개발과제계획서	1부 (PDF본)	주관기관	[붙임 5] 파일 작성
14	(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)	기술이전계약서*	1부 (PDF본)	대표제출	주관기관-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

^{*}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, 이전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(이전 확약서 등)으로 대체하여 제출

8.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

○ (기술료 징수 대상) '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'은 ^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, ^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, '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'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

연구개발기관유형	중소기업	중견기업	중소-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기술료 상한	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	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	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
기술표 중인	10%	20%	40%

- 기술료 산정기준

연구개발기관유형	중소기업	중견기업	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① 실시계약을	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	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	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
체결한 경우	기술료의 5%	기술료의 10%	기술료의 20%
② 직접 실시한	(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)의	(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)의	(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)의
경우	5%	10%	20%

^{※ &#}x27;기술기여도'는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, 기여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

9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」, 「과학기술기본법」등을 적용

10. 문의처
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(연락처: 02-3460-9168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(연락처: 044-202-4737)
 - ※ 신청·접수여부,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바랍니다.

11. 사업설명회 안내

구 분	[오프라인 사업설명회]		
일 시	(1차) '25. 2. 25(화) / 14:30~16:00		
	(2차) '25. 2. 26(수) / 14:30~16:00		
	※ 신청/접수기한 : '25. 2. 19(수) ~ 2. 24(월) 18:00까지 (참가신청 필수)		
장 소	산기협회관 1층 명예의전당		
	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, 산기협회관(양재역 8번출구 도보 5분)		

*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협조 바랍니다(주차장 협소)

구 분	[온라인 사업설명회]
일 시	(동영상 게재기간) '25. 2. 27(목) ~ '25. 3. 10(월)
- 경 로	산기협 유튜브 채널(산기협TV)을 통해 동영상 게재

*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※ [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방법]

-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(www.koita.or.kr) 접속
- ② '회원사지원' → '교육' 메뉴의 '교육신청' 클릭
- ③ 교육명(2025년 K-HERO 육성·지원사업 사업설명회) 검색/조회 후 "신청하기" 클릭
- ④ 로그인 화면에서 비회원 로그인(이용자 등록을 안 하신 경우) 후 참석인원 추가하여 신청
- * 강의장 규모로 인해 신청이 조기마감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.